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보험상품명: 신한두개로OK암보험(무배당, 갱신형)

■ 보험상품의 종목: 암보험

(1) 상품의 주요 특징

신한두개로OK암보험(무배당, 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10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			
여성유방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3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를 지급함)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3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를 지급함)			
소액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1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를 지급함)			
※ 1년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계약 약관 <부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신한**1**두개로OK❷암보험(3무배당, 4생신형)

- ① 두개로OK: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② **암보험:** 암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③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❹ 갱신형 : 보험계약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리확정형 2.25% ^[적용금리 고정]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형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 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상품명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급여금	가입 후 <mark>90일간</mark> 보장 제외
주계약	여성유방암 진단급여금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일반암진단 생활비특약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일반암진단 특약	암진단급여금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민원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감액지급	
20% [1년미만]	

상품명	담보명	감액 기간 및 비율
		가입 후 1년미만에 지급사유
	암진단급여금	발생시 1년이상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0% 지급
		가입 후 1년미만에 지급사유
	여성유방암 진단급여금	발생시 1년이상시 지급하는
- 주계약		보험금의 20% 지급
17111		가입 후 1년미만에 지급사유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발생시 1년이상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0% 지급
	소액암 진단급여금	가입 후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년이상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0% 지급
일반암진단		가입 후 1년미만에 지급사유
생활비특약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발생시 1년이상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0% 지급
일반암진단		가입 후 1년미만에 지급사유
투약 -	암진단급여금	발생시 1년이상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20% 지급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상품명	담보명	보장한도	
	암진단급여금	최초1회에 한해 보장	
주계약	여성유방암 진단급여금 최초1회에 한해 보장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최초1회에 한해 보장	
	소액암 진단급여금	각각 <mark>최초1회</mark> 에 한해 보장	
일반암진단 생활비특약	일반암진단 후 생활비	최초1회에 한해 보장	
일반암진단 특약	암진단급여금	<mark>최초1회</mark> 에 한해 보장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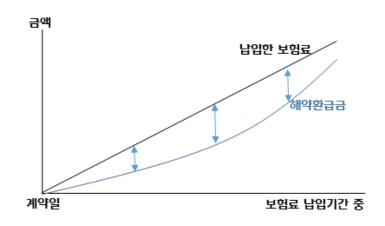
암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2 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차성 암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일차성 암을 기준으로 보장여 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갱신형 계약은 <mark>갱신할 때 마다</mark>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 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신한두개로OK암보험(무배당, 갱신형)

신한두개로OK암보험 일반암진단생활비특약(무배당, 갱신형)

신한두개로OK암보험 일반암진단특약(무배당, 갱신형)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 ① 이 보험은 암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 ① 간편심사 보험이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상품을 말합니다.
- ②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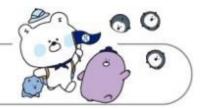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제1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 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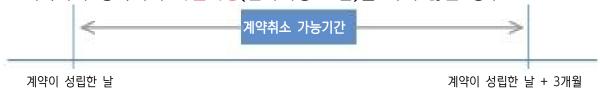
「주의사항: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계 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 약관 제18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의 청약시 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③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주계약 약관 제14조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 해지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주의사항]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과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② 청약서의 질문사항과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 에게만 알린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 ○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과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여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 약관 제27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 약관 제28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 대출

주계약 약관 제34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
 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71 7 340A
	원금	이자	계	실수령액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8) 보험금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제7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영업일)



[주의사항]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청구서 신분증
입원	Δ	•				
수술	Δ		•			
실손	Δ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한두개로OK암보험(무배당, 갱신형) 주요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함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함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등)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으로 구성됨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함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함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 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 등이 결정됨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함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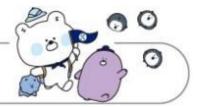
신한두개로OK암보험(무배당, 갱신형)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STEP 01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STEP 02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TEP 03 보험계약체결(회사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STEP 04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콜센터 (1588-5580) 또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